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보험료 및 인건비 지원〉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1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주요 검토사항	4

I .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철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3. 27.

(3) 회 부 일 : 2026. 3.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제2조제2호다목1)에 해당하는 혁신형 제약기업(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국가가 5년 동안 전액 지원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2(인건비 등 지원)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5항

	<u>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u>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지원의 유효기간)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약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부과되는 보험료 중 제약기업이 부담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제약기업”이란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2. 주요 검토사항

□ 혁신형 제약기업은 현행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일정 규모 이상을 신약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약기업을 말함.

-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연장할 수 있으며, 2026년 현재 48개의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상황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을 말한다.

가. 신약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나.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①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금액을 말한다.

1.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기업: 연간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

2.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제약기업: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

3.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관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3

< 최근 5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수 현황(연도말 기준) >

(단위: 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1.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수	43	46	49	49	48

자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성

□ 혁신형 제약기업의 종류는 ‘일반 제약사’, ‘바이오 벤처사’, ‘외국계 제약사’로 구분되며, 현재 33개의 일반제약사, 11개의 바이오 벤처사, 4개의 외국계 제약사가 있음.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2026. 4. 기준) >

구분 (갯수)	기업명
일반 제약사 (33)	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보령, 부광약품, 삼양바이오팜,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에이치케이이노엔, 온코닉테라퓨틱스,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일동제약, 태준제약, 파미셀, 한국비엠아이, 한국팜비오, 현대약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울바이오파마,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SK케미칼
바이오 벤처사 (11)	비씨월드제약, 알테오젠, 올릭스, 에이비엘바이오, 제넥신, 지아이이노베이션, 코아스템캠온, 큐로셀, 큐리언트, 테고사이언스, 헬릭스미스
외국계 제약사 (4)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한국오츠카, 암젠코리아

자료: 보건복지부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현행법 제13조²⁾에 따라 신약 연구개발 및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등에 총 188억 4,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음.

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연구·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지원 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R&D 지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 지원	4	1,230	3	1,100	2	600	-	-	-	-	9	2,930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3	1,102	3	1,227	1	800	-	-	-	-	7	3,129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	-	-	-	2	375	2	500	-	-	0	0
	국가신약개발사업	-	-	6	1,257	10	3,461	16	3,235	17	2,991	49	10,944
	미래 제약바이오 10대 특화 유망지원	1	417	-	-	-	-	-	-	-	-	1	417
	소 계	8	2,749	12	3,584	15	5,236	18	3,735	17	2,991	70	18,295
사업 지원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강화 지원 사업	3	114	5	239	1	100	-	-	-	-	9	453
	해외 파트너링 경비 지원	5	5	5	5	4	14	3	17	4	52	21	93
	소 계	8	119	10	244	5	114	3	17	4	52	30	546
지원 합계		16	2,868	22	3,828	20	5,350	21	3,752	21	3,043	100	18,841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현행법 제14조·제15조·제16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조치, 법인세 등 세액공제, 연구시설 건축 시 입지규제 완화 및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정책자금 융자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요건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 >

지원 사항	주요 내용
R&D 우대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 관련 정부 R&D 과제* 신청 시, 선정평가에 가산점 부여 *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등 · 국가신약개발사업 신청 시 2%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시 2점 가산점 부여
세제지원	·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규제 완화	· 연구시설 건축 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정책자금 융자	·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대출 상품별 우대금리 적용(수출입은행) - 수출촉진자금대출: 수출용 의약품 국내외 임상 2상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저리의 임상자금 지원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실적 보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6개월~3년) - 수입자금대출: 원료의약품 등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자금 지원 - 해외사업관련대출: 해외법인 설립 및 인수 등 해외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또는 사업자금 대출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관리요건 특례	우수 기술보유 기업 등에 대한 매출액 요건 면제(금융위) · (대상)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진입한 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 (특례) 매출액 30억원 요건 면제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주민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제약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제약기업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①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한편, 2024년 기준 국내 제약산업 시장 규모는 240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해당하나,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2020~2024년)의 연평균 성장률도 5.5%로,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6.3%)을 하회하는 상황임.

<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 규모 >

(단위: 십억달러, %)

순위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E]	비중	CAGR
1	미국	546	579	619	682	721	39.2	7.2
2	중국	155	199	228	248	282	15.4	16.2
3	독일	78	87	80	84	87	4.8	3.0
4	일본	103	103	89	87	84	4.6	-4.8
5	프랑스	47	51	50	54	55	3.0	3.7
6	영국	40	54	42	44	47	2.5	3.9
7	이탈리아	35	38	38	39	40	2.2	3.6
8	캐나다	31	35	36	36	37	2.0	4.8
9	스페인	30	32	30	32	33	1.8	2.4
10	인도	27	31	31	31	33	1.8	4.8
11	러시아	22	25	32	27	27	1.5	5.0
12	브라질	21	25	25	27	26	1.4	5.5
13	대한민국	20	22	23	24	24	1.3	5.5
14	멕시코	11	13	15	17	17	0.9	11.2

순위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E]	비중	CAGR
15	호주	12	14	14	15	15	0.8	6.2
16	폴란드	11	12	11	12	13	0.7	4.7
17	사우디아라비아	9	11	11	12	13	0.7	10.5
18	스위스	9	10	10	11	12	0.7	7.1
19	튀르키예	9	9	8	11	11	0.6	5.6
20	네덜란드	10	10	10	10	11	0.6	2.7
기타국		212	247	235	245	248	13.5	4.0
합계		1,436	1,607	1,637	1,749	1,837	100.0	6.3

자료: 2025 바이오헬스산업 통계집(2025.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또한, 「2025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3.4%로, 12대 주요 산업군의 평균 부족률(2.6%)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12대 주력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현황(2024년 말 기준) >

(단위: %)

12대 주력 산업 전체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 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소프트 웨어	IT비즈니스
26	2.7	0.7	1.6	3.4	3.0	2.0	2.6	1.2	1.9	3.6	4.1	2.1

자료: 2025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산업통상부)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혁신형 바이오 벤처사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는 4대 보험료를 5년 동안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 기업의 고정비용 및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자본이 부족한 벤처기업 등의 생존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건비나 기관 납부 보험료 등에 대한 자료는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기업당 평균 재직 인원은 일반 제약사 1,363명, 바이오 벤처사 128명, 외국계 제약사 362명으로 조사되었음.

< 혁신형 제약기업 재직 인원 현황 >

(단위: 명)

구분	평균 재직 인원
일반 제약사(33개)	1,363
바이오 벤처사(11개)	128
외국계 제약사(4개)	362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입법례를 살펴보면, 주로 소규모 사업장 등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지원 방식 또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의 형태로 마련되어 있음.
- 또한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입법례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고용한 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 정부 정책에 협력하거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보상적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음.

< 기업에 대한 보험료 및 인건비 지원에 관한 입법례 >

보험료 지원에 관한 입법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① (생략) ② 국가는 <u>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u>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건비 지원에 관한 입법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2조의 공동체사업단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기관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①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사서비스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1. 가사서비스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소속 가사관리사(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만 해당)
- **(지원요건)** 지원대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1. (보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
 2. (재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3.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
- **(지원수준)**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지원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요건)** 지원대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1. (보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
 2. (재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3.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36개월

자료: 가사랑(www.gasarang.go.kr) 및 두루누리(www.insurancesupport.or.kr) 홈페이지

□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미 연구개발 지원, 세제지원 및 정책자금 융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종사자 역시 석·박사 학위자나 약사 등 전문인력의 비중이 높은 점, 기업 규모 또한 작지 않은 점 등과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지원 관련 입법례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로써, 특정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96